

대구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3183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318374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영주시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소1140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수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2. 28.

판결선고 2024. 3. 27.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소 11401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2017. 12. 14. 법무사 E 사무실에서 F와 사이에 그 소유의 경북 봉화군 G 임야 54,81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매수인 명의는 H의 관계인인 I으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8. ‘30,000,000원을 이 사건 임야 작업 및 용역비조로 수령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H은 2018. 1. 30. J 법무사 사무실에서 F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및 K 임야 861㎡를 2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8. 3. 28.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1/5 지분에 관하여, H은 이 사건 임야 중 4/5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와 D은 2021. 2.경까지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을 2021. 2. 6. L과 M에게 각 매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허가를 받아주고 원고가 그에 대한 작업비 및 용역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위 허가를 받지 못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21. 2.경까지도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작업비 및 용역비 지급약정을 할 당시 이 사건 임야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임야에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허가가 나오는 것이 위 지급약정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고, 이는 위 지급약정의 중요부분인데 원고가 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위 지급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2023. 2. 28.자 준비서면 부분의 송달로써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위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금전 반환약정 체결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제1심 증인 N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N은 원고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2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는바, 원고가 이와 중복하여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전문가도 아닌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허가의 취득을 의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영수증의 내용을 직접 작성한 증인 N은 이 사건 영수증의 ‘작업 및 용역비’는 토지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 전체를 매매할 수 있는 작업이고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는 전문가가 따로 하는 것이지 이것과는 별개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위 30,000,000원은 피고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를 함께 찾아 소개시켜준 O, P에게 나누어 지급되었고, 피고는 그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법원 증인 Q의 증언, 제1심 법원 증인 N의 일부 증언,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가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허가를 받아주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거나, 만일 피고가 허가를 받아주지 못하면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허가를 취득해주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수증의 '작업 및 용역비'는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허가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를 찾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세영, 판사 조세진, 판사 김래니